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.

발 의 자 : 이인선 · 송언석 · 안철수
김성원 · 이종배 · 고동진
서지영 · 박충권 · 유용원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할·관리하도록 하고,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선거·국민투표의 관리계획, 투표·개표의 운영방식, 투표용지 관리, 사전투표 운영 등 선거사무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의 주요 부분이 사무처의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 수립·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·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,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, 그 의결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

는 것임(안 제3조의2 신설).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선거관리계획 등의 수립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·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 및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결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조의2(선거관리계획 등의 수립)</u>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·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계획 및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결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